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무화〉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72호)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9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57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597호)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2
3.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무화 (안 제39조제2항)	4

I.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57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4.

다. 회 부 일 : 2025. 10.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Ⅱ.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59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5.

다. 회 부 일 : 2025. 10. 16.

2. 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한다”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성을 강화함(안 제39조제2항).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련 조문을 본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번호를 정비함(부칙 제2조).

라. 신설로 인한 조문 순서를 정비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무화(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등)

현 행	복기왕의원안	배준영의원안
○ 입찰 참가 자격 -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예외 사유 규정 <신 설>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입찰 참가 자격 - (현행과 같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2항에 따라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됨 - (현행과 같음)	○ 입찰 참가 자격 -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만, 예외 사유 규정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2항에 따라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됨 -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각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배준영의원안) 및 다른 법률(복기왕의원안)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배준영의원안은 현행법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제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9조제2항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²⁾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³⁾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9조제3항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이하 생략)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령)」⁵⁾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계약과정에서의 부정당행위가 공익에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입찰참가제한 관련 「국가계약법」 비교]

공운법§39	국가계약법§27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기획재정부령*</u>으로 정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u>」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령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이 준용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⁶⁾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국가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에서 별도의 처분 없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계약 대상 업체가 과거 다른 계약관계에 있어서 담합, 사기, 관련 법 위반 등에 따라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의무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재량사항인 것처럼 보여 대상자에게 법 적용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에의 입찰권, 기업활동의 자유권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도 공공기관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국가계약법과 같이 기속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계약법 준용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다른 법령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동 개정안들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윤후덕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043호)이 발의되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복기왕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생략)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 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 2년 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u>제한할 수 있다.</u>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 정당업자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 ----- 제한한다. ----- ----- ----- ----- ----- ----- ----- ----- ----- -----.
1.~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

현행	복기왕의원안	배준영의원안
③ (생략)	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